# 관세사 법인 및 합동사무소 - 2024년

## 보험료표

Case선택	Case A - 사고공동부담비율 미적용			Case B - 사고공동부담비율 15%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	연간보험료(1청구당 / 연간 총 보상한도액)			연간보험료(1청구당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백만원	769,000				512,000			
2백만원	689,000	1,067,000	1,232,000	1,342,000	458,000	711,000	818,000	892,000
3백만원	638,000	990,000	1,144,000	1,249,000	425,000	658,000	761,000	830,000
5백만원	606,000	947,000	1,049,000	1,125,000	402,000	632,000	697,000	747,000
1천만원	567,000	901,000	990,000	1,062,000	377,000	599,000	658,000	706,000
1천5백만원	509,000	806,000	913,000	990,000	339,000	535,000	606,000	658,000
Case 선택	Ca	Case C - 사고공동부담비율 30%			* Case B, C 사고공동부담비율 각 15%, 30% 조건: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자기부담금	연간.	보험료(1청구당 / 연간 총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분담비율 15%(B), 30%(C)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백만원	215,000					중 가입조건 변		•
2백만원	193,000	300,000	346,000	377,000	※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및 합동사무소는 등록관세사 전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일괄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세사
3백만원	180,000	278,000	322,000	350,000				
5백만원	170,000	267,000	294,000	316,000			제2조 제5호부	
1천만원	159,000	252,000	278,000	298,000	업무만 수행하는 관세사는 보험조건을 달리하여 가입			<u> </u>
1천5백만원	143,000	226,000	256,000	278,000	<u>가능</u> 합니다			

- \* 보상한도는 1청구당/연간 총 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매 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보험료는 관세사 1인당 보험료이며, 최종납입보험료는 소속된 관세사별 보험료를 합산 적용됩니다.
- \* 연간총 보상한도액은 상기 1청구당 보상한도액에 관세사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 보상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원하실 경우 록톤코리아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무사고 가입 기간에 따른 할인

구분	신규~1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 10년 이상	11년 이상 ~ 14년 이상	15년 이상
할인율	0%	5% 할인	7% 할인	10% 할인	15% 할인

## 사고자 보험료 할증

보험금을 수령하신 관세사님들은 갱신시 수령보험금 규모에 따라 3개년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규모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백만원 이하	50%	미적용	미적용
5 백만원초과 ~ 1 천만원이하	80%	50%	미적용
1 천만원초과 ~ 2 천만원이하	150%	80%	50%
 2 천만원 초과	250%	150%	80%

-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관세사님은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복원하여야 합니다.
- \* 할증기간 중 추가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차년도 할증은 기존 적용 할증율과 비교하여 높은 할증율을 적용 (3년간 순차 적용)

#### 사무원의 부정직행위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는 관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적용을 원칙
- 가입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사무원에 대하여 보장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자기부담금 (1 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1천만원 / 1천만원	50 만원	80,000 원		
「인간된 / 「인간된 	1 백만원	73,000 원		

<sup>\*</sup> 본 특별약관의 1청구당/연간총 한도는 1천만원으로 사무원 1인당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이 아닙니다.